

청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657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1,667,836원 및 그 중 90,547,397원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2022. 1. 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4.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0. 5. 6. 접수 제114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8. 1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보증기한은 그 후 2021. 8. 13.까지로 연장되었다.

○ 피고 회사가 2020. 6. 3. 거래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당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21. 8. 1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 12. 9. 피고 회사의 채무 90,547,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으로 687,709원을 지출하였고, 미수추가보증료 432,73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8%이다.

나. 근저당권 설정

○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B, 공동담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6.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판단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91,667,836원(= 대위변제금 90,547,397원 + 대지급금 687,709원 + 미수추가보증료 432,7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547,3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1.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인 2021. 12. 9.(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 성립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4. 20.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와 같은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B는, 2022. 1. 11.자 답변서로는 ‘자신은 2019. 4. 11. 피고 회사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000,000원만 변제받고 5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수차례 피고 회사에게 변제독촉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2. 3. 11.자 준비서면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면서 C으로부터 소개비로 5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C이 그 돈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으라고 하기에 그러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피고 B가 대신 지급해 준 것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자신은 피고 회사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나 그 피담보채권의 내용 등에 관한 피고 B의 주장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설령 피고 B가 자신의 주장(전후의 주장 중 어느 것이든)과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